INNOPAY 부속 특약서 (영중소 우대 수수료)

______(이하 "고객사"라 한다)과 <u>주식회사 인피니소프트(</u>이하 "회사"라 한다)는 기 체결한 "INNOPAY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 의 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 후 부속 특약서를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특약서는 "회사"가 "본 계약" 상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고객사"와 "회사" 간의 합의에 의해 "고객사"가 부담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회사"가 변경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우대 수수료)

- 1. "고객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에 따라 제 6 조 제 2 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사"의 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이 때 연매출액 산정 등 등급 분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①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 ② "중소 1 가맹점" (연매출 3 억원 초과 ~ 5 억원 이하)
 - ③ "중소 2 가맹점" (연매출 5 억원 초과 ~ 10 억원 이하)
 - ④ "중소 3 가맹점" (연매출 10 억원 초과 ~ 30 억원 이하)
 - ⑤ "일반가맹점" (연매출 30 억원 초과)
- 2. "고객사"의 등급은 매 반기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여 변경된다.
- 3. "고객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 조 제 1 항에 의거한 "고객사"의 등급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아래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에 회사가 제공하는 INNOPAY 서비스 표준 이용료(1.1%)를 포함한 결제 수수료 (이하 "INNOPAY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INNOPAY 서비스 표준 이용료(1.1%)는 "고객사"의 업종, "회사"의 영업정책, 카드사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 ①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0.8%
 - ② "중소 1 가맹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 1.3%
 - ③ "중소 2 가맹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 1.4%
 - ④ "중소 3 가맹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 1.6%
- 4. "고객사"의 등급은 본 조 제 2 항에 따라 매 반기마다 자동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사"의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사"의 등급에 따른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는 자동 증감되며, 그에 따라 "INNOPAY 서비스 이용 수수료"도 자동 증감된다. "고객사"의 등급 변경에 따라 "INNOPAY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자동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고객사"는 본 특약서를 체결함으로써 "INNOPAY 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5. "고객사"가 본 조 제 1 항에 따라 "일반가맹점"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 제 3 항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본 계약"의 제 7 조 (서비스 이용료 및 수수료 등) 제 1 항 및 [INNOPAY 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 (예외 사항)

- 1. "고객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자동결제, 신용카드 ARS 자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INNOPAY 서비스 표준 이용료를 1.5%로 정하고, "고객사"는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에 INNOPAY 서비스 표준 이용료(1.5%)를 합한 결제 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 2. "고객사"가 제 2 조 1 항에 따라 "영세가맹점", "중소 1 가맹점", "중소 2 가맹점", "중소 3 가맹점"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의 제 3 조 (책임 및 의무) 제 1 항에 따른 "고객사"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본 계약"의 제 13 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제 1 항에 따른 이용자의 이의제기 또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특약서의 제 2 조 제 3 항에 따른 INNOPAY 서비스 표준 이용료(1.1%)를 적용하지 않는다.
- 3 "고객사"의 업종이 카드사에서 지정한 유의업종, 관리업종, 리스크관리 업종의 가맹점의 경우, 본 특약서의 제 2 조 제 3 항에 따른 INNOPAY 서비스 표준 이용료 (1.1%)를 적용하지 않는다. 카드사에서 지정하는 유의업종, 관리업종, 리스크관리 업종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한다.
- 4. 본 특약서의 제 2 조 제 3 항에 따른 INNOPAY 서비스 표준 이용료(1.1%)를 적용하지 않는 "고객사"의 경우, "본 계약"의 제 7 조 (서비스 이용료 및 수수료 등) 제 1 항 및 [INNOPAY 신청서] 제 4 항 서비스 이용 조건에서 정한 수수료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INNOPAY 서비스 이용료로 정하고, "고객사"는 "회사"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에 위 INNOPAY 서비스 이용료를 합한 결제 수수료를 지급한다.
- 5. 제 1 항에서 말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란 "고객사"의 이용자의 이의제기 또는 이용자 민원이 카드사 또는 "회사"로 2 개월 연속 월 3 회 이상 접수되는 등의 경우를 의미한다.

제 4 조 (계약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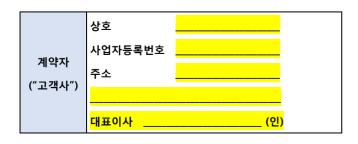
기 체결된 "INNOPAY 서비스 이용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본 특약서를 체결하는 날로부터 1년으로 변경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서면상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 5 조 (기타)

본 특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고객사"와 "회사"는 <mark>20__</mark>년 <mark>__</mark>월 <mark>__</mark>일 체결한 "본 계약"의 내용을 따르며, "본 계약"과 본 특약서가 충돌하는 경우 본 특약서가 우성하다

본 특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회사"와 "고객사"는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mark>20_</mark>년 월 일



	계약자	상호	㈜인피니소프트
		사업자등록번호	119-86-46658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307호
			(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307호)
		대표이사	황 인 철 (인)